

電氣用品安全管理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법률안

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 등)"을 "(안전인증 등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중 "安全認證을"을 각각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조 제2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6.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제5조의 제목 "(安全認證등)"을 "(안전인증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 중 "試驗한 결과를"을 "시험한 결과와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를"로 하고, 동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④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로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확인·안전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절차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확인·안전검사·정기검사에 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안전인증의 표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로, "安全認證"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를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收去命令등)"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產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때에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產業資源部長官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제9조의 제목 "(安全認證의 取消)"를 "(안전인증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인증을 받은 때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 기술표준원 동정 ■

하게 제조된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6.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8.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9.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①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발생의 방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개발·교육
2.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발간·보급
3.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 및 확인
4. 기업 등과의 전기용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보고 및 檢査等)"을 "(보고 및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產業資源部長官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 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安全認證·定期検査·自體検査等"을 "안전인증·안전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第5條第1項 但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檢査 또는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2年이하의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安全認證을"을 각각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호중 "安全認證을"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로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

6. 제5조제2항 또는 제7항이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자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第8條第1項 및 第3項"을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으로 한다.

